

# 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

-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-

#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개요

- 발의자 : 육미선 의원 등 10인
- 발의일자 : 2020년 6월 4일
- 회부일자 : 2020년 6월 5일
- 상정일자 : 2020년 6월 24일
  -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: 상정·의결
- 주요내용 :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## 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육미선 의원)

### 가. 제안사유

- 「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」 제정에 따라 「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」의 중복된 조항을 삭제·정리하고 운영 과정에서 새로 정립된 일부 원칙·기준을 반영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의사일정 작성 및 협의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8조)
  - 회기 전체의사일정과 당일의사일정 작성
  - 전체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
- 의사일정 변경에 의사일정 삭제 신설(안 제9조)
- 본회의에 직접 부칠 수 있는 의안 추가(안 제12조)

- 회기 변경의 건
- 휴회 또는 폐회에 관한 건
- 투표에 있어 투표 인원수 명확화(안 제47조)
- 위원 아닌 의원의 출석 허가 및 발언 범위(안 제53조)
  - 위원 아닌 의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
  - 발언은 설명 또는 의견 제시만 할 수 있음
- 의원 자격심사 관련 자구 수정(안 제70조 ~ 제72조)
  - 의원자격심사 청구의원 → 청구의원
  - 의원자격심사청구서 → 청구서
  - 의원자격심사 보고서 → 심사보고서
  - 피청구 의원 → 피심의원
- 방청석의 장애인석 지정(안 제73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권영주)

-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의 중복된 조항을 삭제·정리하고 회의 운영 과정에서 새로 정립된 일부 원칙과 기준을 반영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
- 기존 규칙은 9장 94조로 구성되었는데 이중 제2장 의장과 부의장, 제6장 도지사·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, 제7장의 의원의 사직에 관한 조항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여 7장 84조로 구성되었음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충청북도의회 회의 총칙 규정
- 안 제3조에서 제46조까지는 회의에 관한 사항
- 안 제47조에서 제62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
- 안 제63조에서 제69조까지는 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
- 안 제70조에서 제72조까지는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
- 안 제73조에서 제78조까지는 방청에 관한 사항
- 안 제79조에서 제84조까지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

○ 「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」 제정과 더불어 시행규칙인 「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」이 전부개정되면 하반기 의회 운영에 있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: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. 끝.

의안번호	제 451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##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

발의자	육미선 의원 등 10인
발의연월일	2020년 6월 4일

#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

(육미선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451
--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0년 6월 4일

발의자 : 육미선, 김영주, 허창원,  
이상정, 서동학, 정상교,  
최경천, 윤남진, 오영탁,  
임영은

## 1. 제안이유

- 「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」 제정에 따라 「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」의 중복된 조항을 삭제·정리하고 운영 과정에서 새로 정립된 일부 원칙·기준을 반영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의사일정 작성 및 협의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8조)

- 회기 전체의사일정과 당일의사일정 작성
- 전체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

### 나. 의사일정 변경에 의사일정 삭제 신설(안 제9조)

### 다. 본회의에 직접 부칠 수 있는 의안 추가(안 제12조)

- 회기 변경의 건
- 휴회 또는 폐회에 관한 건

라. 투표에 있어 투표 인원수 명확화(안 제47조)

마. 위원 아닌 의원의 출석 허가 및 발언 범위(안 제53조)

- 위원 아닌 의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
- 발언은 설명 또는 의견 제시만 할 수 있음

바. 의원 자격심사 관련 자구 수정(안 제70조 ~ 제72조)

- 의원자격심사 청구의원 → 청구의원
- 의원자격심사청구서 → 청구서
- 의원자격심사 보고서 → 심사보고서
- 피청구 의원 → 피심의원

사. 방청석의 장애인석 지정(안 제73조)

3. 전부개정규칙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비용추계 : 없음

# 충청북도의회 규칙 제 호

##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

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

##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 제71조 및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57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충청북도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의회의 개폐선포)**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개회와 폐회는 충청북도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선포한다.

#### 제2장 회 의

##### 제1절 회의의 개폐

**제3조(회기)** ① 의회의 회기와 회기연장은 의결로 정한다.

-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.
- 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.
- ④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.

**제4조(개의)**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.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.

- 제5조(회의에 관한 선포)** ① 개의 · 정회 · 산회 및 유회는 본회의에서는 의장이, 위원회에서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이 선포한다.
- ②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개의 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3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면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.
-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·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.

- 제6조(회의의 공개)** ① 의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충청북도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이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, 의원의 자격심사, 법령에서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한 사항, 그 밖에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 비공개회의 발의에 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여야 한다.

- 제7조(휴회)**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.
- ② 휴회 중이라도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나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재개하여야 한다.

## 제2절 의사일정

- 제8조(의사일정의 작성)** ① 의장은 본회의 개의일시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대강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.
- ② 제1항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-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.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.
- ④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.

**제9조(의사일정의 변경)**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의원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·삭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.

**제10조(의사일정의 미료안건)**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.

### 제3절 의안 및 동의

**제11조(의안의 제출과 발의)**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도지사, 교육감, 위원회,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. 다만,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은 회기 개시일 7일 전(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한다)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출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전일까지 제출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④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 의원과 위원회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, 도지사와 교육감은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,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. 다만,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.

⑥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.

**제12조(상임위원회 회부)** ① 의장은 의안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,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. 다만, 폐회나 휴회 중에는 본회의에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.

1. 의장, 임시의장, 부의장의 선거
2. 의장, 부의장의 불신임 건
3. 의장, 부의장, 상임위원장의 사임 동의의 건
4. 회기 중에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
5. 상임위원장,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의 건
6.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
7.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
8. 도지사나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
9. 회기 결정 또는 변경의 건
10. 재의요구의 건
11. 회의록 기재사항과 정정에 관한 이의 신청의 건
12.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
13. 본회의 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의 건
14. 휴회 또는 폐회에 관한 건

③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.

④ 의장은 소관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그 관련 위원회에도 소관 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를 명시하여 회부하여야 한다.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.

⑤ 의장이 제4항에 따라 관련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면 관련 위원회가 소관 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⑥ 소관 위원회는 관련 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제5항의 기간 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을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.

**제13조(특별위원회 회부)**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  
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**제14조(조례안 예고)** ① 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안 중 필요한 경우, 그 입법 취지나 주요내용, 전문 등을 예고(이하 “조례안예고”라 한다)할 수 있다.  
② 제1항에 따라 조례안예고를 할 때에는 관련 조례를 심사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정부담 수반, 규제강화 여부 등에 대한 충청북도 관련 부서의 의견과 조례안예고문을 작성하여 미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 
③ 조례안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.  
④ 조례안예고는 조례안예고문을 의회 홈페이지나 충청북도 도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되, 의장명의로 예고한다.  
⑤ 조례안예고문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조례안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고,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자체 없이 알려야 한다.  
⑥ 그 밖에 조례안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**제15조(심사기간)**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  
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.

**제16조(위원회의 제출의안)**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**제17조(동의의 의제성립)**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.

**제18조(수정동의)**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 
②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.  
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.  
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.

**제19조(의안과 동의의 철회)**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려면 발의자 전원이,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한 자가 의장에게 문서로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각각 동의를 얻어야 한다.  
② 도지사나 교육감은 의회에 제출한 의안을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하거나 철회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. 다만, 제출된 의안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경우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 
③ 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안을 위원장이 철회하려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위원장 명의로 발의한 의안이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 의안에 관한 번안동의가 해당 위원회에서 발의되어 해당 위원장이 이미 제출한 의안에 관하여 회송을 요청할 경우에는 제안 의안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.

**제20조(번안)** 본회의의 번안은 의안을 발의한 의원과 그 의안 발의에 찬성한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하고, 위원회의 번안은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. 다만,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 안건은 번안할 수 없으며 본회의의 의제가 된 안건은 위원회에서 번안할 수 없다.

**제21조(안건심의)** ① 본회의의 안건 심의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은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며,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의 전부나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.  
② 제1항의 제안자가 도지사와 교육감일 경우 상세한 제안설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.

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.

**제22조(재회부)**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**제23조(의안의 정리)**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는 후 그 내용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, 문구,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하면 이를 의장이나 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**제24조(의안의 이송)** ① 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이를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나 교육감은 의회로부터 이송된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
#### 제4절 발 언

**제25조(발언의 허가)** ① 의원이 발언을 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알려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발언을 알리지 않은 의원은 알린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.

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미리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,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사안이라고 인정되면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.

**제26조(발언의 장소)** ① 본회의에서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.

**제27조(발언의 계속)**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, 산회하거나 회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하여야 한다.

**제28조(의제외 발언의 금지)** ① 회의장 안에서는 의사진행이나 의제와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할 수 없다.

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.

**제29조(발언회수의 제한)**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까지 발언할 수 있다. 다만,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이나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**제30조(5분 자유발언)** ① 의장은 본회의 개의 중에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, 도정시책, 제도개선, 주민복지 등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(이하 “5분 자유발언”이라 한다)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다.

③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④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는 의장이 정하며 발언순서는 5분 자유발언 접수부의 접수순서에 의한다.

⑤ 의장은 5분 자유발언 내용이 발언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할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킬 수 있다.

**제31조(발언시간의 제한)**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질의 · 보충발언 · 의사진행발언 ·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발언시간 제한으로 의원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.

**제32조(보충보고)**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 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
**제33조(토론의 통지)**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.

② 의장은 제1항의 알림을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,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.

**제34조(의장의 토론참가)**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하려면 의장석에서 물러나 의원석에서 하여야 하며,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앉을 수 없다.

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토론에 참가하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.

**제35조(질의와 토론의 종결)** ① 질의나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.

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. 다만,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에 동의할 수 없다.

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.

## 제5절 표 결

**제36조(표결의 선포)**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.

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.

**제37조(표결의 참가)**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. 그러나 투표 또는 전자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의 투표 종료 선포 전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.

**제38조(의사변경의 금지)**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.

**제39조(표결방법)** ① 표결할 때에는 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립이나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.

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.

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.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.

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, 의원 자격 심사, 징계, 인사와 관련된 안건, 재의 요구의 건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실시한다.

**제40조(투표절차)**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. 이 경우 출석의원 수의 계산은 명패 함에 들어 있는 명패의 수로 한다.

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투표의 수를 점검 계산하게 하여야 한다.

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. 다만,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.

④ 명패의 수가 투표의 수보다 많은 경우 투표의 수보다 많은 명패 수는 기권으로 본다.

⑤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.

**제41조(수정안의 표결순서)**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.

1.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.
  2.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.
  3.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.
-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.

**제42조(표결결과 선포)**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의장석에서 그 결과를 선포한다.

## 제6절 회의록

**제43조(회의록의 작성)**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.

1. 개회 · 폐회에 관한 사항
  2. 개의 · 회의중지 · 산회의 일시
  3. 의사일정
  4. 출석의원의 성명과 수
  5.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
  6.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· 변동
  7. 모든 보고사항
  8. 의안의 발의 · 제출 · 회부 · 환부 · 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
  9.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그 내용
  10. 의사
  11. 표결수,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및 찬반의원 성명
  12. 서면질문과 답변서
  13. 의원의 발언보충서
  14. 그 밖에 본회의의 의결이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.
- ③ 회의록 기재사항 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 보고서와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.
- ④ 회의록 작성이나 발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**제44조(회의록의 서명과 보존)** ① 회의록에는 의장이나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,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과 사무처장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. 다만,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하거나 날인한다.  
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.

**제45조(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)**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, 그 밖의 발언자는 전자 임시회의록이 의정시스템에 게재한 날부터 7일 이내 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.

1. 법조문이나 숫자 및 고유명사 등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
  2. 간단한 선후 문구를 변경하는 경우
  3. 토씨를 정정하는 경우
  4. 속기의 착오나 오탈자가 있는 경우
-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내용에 관하여 다른 의견을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,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.

**제46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**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. 다만, 의장은 비밀이 요구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하거나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의원이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이나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이나 전재(轉載) 또는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이나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의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배부하거나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.

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 중 전자회의록은 일반에게 배포할 수 있다.

### **제3장 위원회**

**제47조(의사일정과 개회일시)**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**제48조(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)**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. 다만,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렇지 않다.

**제49조(위원회에서의 동의)**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.

**제50조(위원회의 제안)**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이나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.

**제51조(위원회의 심사)**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고, 질의·토론·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③ 제1항의 제안자가 도지사나 교육감일 경우와 제2항의 경우에 충실한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**제52조(위원의 발언)**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나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. 다만,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렇지 않다.

② 위원은 위원회에서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.

**제53조(다른 위원회 의원의 발언 청취)** ①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소속 위원이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. 다만, 발언은 설명 또는 의견 제시만 할 수 있다.

② 위원 아닌 의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54조(위원회의 의사 · 의결정족수)**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**제55조(연설회의)** ① 의안이 2개 이상의 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, 그 안건을 회부받은 소관 위원회는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설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.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.

② 소관 위원회가 연설회의를 열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.

③ 연설회의는 안건을 심사하는 소관 위원장이 주재하며, 위원장의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**제56조(공청회)**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나 학식 · 경험이 있는 자 등(이하 “진술인”이라 한다)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· 일시 · 장소 · 진술인 · 경비, 그 밖의 참고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.

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.

**제57조(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)** ① 위원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(이하 “청구인의 대표자 등”이라 한다)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(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 · 답변을 포함한다)를 들을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·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1조제1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.

**제58조(심사보고서의 제출)**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
**제59조(위원장의 보고)**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나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덧붙일 수 없다.

**제60조(위원회 회의록)**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.

1. 개의와 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
2. 의사일정
3. 출석의원의 성명

4.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
  5. 출석한 공무원 · 진술인의 성명
  6. 심사안건명
  7. 의사
  8. 표결수
  9. 위원장의 보고
  10.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
  11. 그 밖에 위원회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이나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이나 날인한다.

**제61조(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)**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이나 그 밖의 비밀참고 자료에 대하여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나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.

**제62조(준용규정)** 제6조, 제25조, 제27조, 제28조제2항, 제34조에서 제37조까지와 제39조에서 제42조까지의 규정은 위원회 운영에 준용하되, 의장을 위원장으로, 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.

## 제4장 예산안과 결산심사

**제63조(예산안 심의)**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후 도지사나 교육감으로부터 시정연설 또는 제안설명을 듣고,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.  
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(이하 “예결위원회”라 한다)에 회부하고,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.  
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**제64조(예산안 심사의 기본원칙)**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, 삭감예산 증액 시 협의해야 한다.

**제65조(예산안의 수정동의)**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.

**제66조(예산안의 의결)**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분 별로 회의에 부칠 수 있다.  
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.

**제67조(예산안의 재심요구)**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한 후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.

**제68조(결산의 심사)**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.  
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치도록 한다.  
③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도지사나 교육감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하고 도지사나 교육감 및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 
④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3조제3항을 준용한다.

**제69조(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)**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63조부터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예산”은 “기금운용계획(기금운용계획변경)”으로, “결산”은 “기금의 결산”으로 본다.

## 제5장 자격심사

제70조(자격심사 청구서의 회부와 답변) ① 의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,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답변기일을 정하여 송달하여야 한다.

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이나 질병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답변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제71조(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등) ① 의장은 피심의원으로부터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

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자격심사청구서(이하 “청구서”라 한다)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. 다만,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.

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.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.

④ 본회의에서 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의결을 한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.

제72조(심문과 발언)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거쳐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.

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·발언할 수 있다.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·발언하게 할 수 있다.

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.

## 제6장 방 청

제73조(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)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. 이 경우 의장은 방청을 허가받은 장애인 등을 위한 방청석을

별도로 지정해야 한다.

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·단체방청권·장기방청권으로 한다.

**제74조(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)** ① 본회의장의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장이 교부하고,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권은 소관위원회에서 교부한다.

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대표나 책임자에게 교부한다.

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기관의 직원에게 교부하며,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 중에 방청할 수 있다.

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, 성명, 직업, 연령 등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**제75조(방청인의 준수사항)** ① 방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.

1.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거나 마이크 등 확성기를 사용하는 행위
  2. 모자, 외투, 슬리퍼를 착용하는 행위
  3. 통신기기를 휴대하여 통화나 통신을 하는 행위
  4. 음식물의 섭취, 흡연 및 껌을 씹는 행위
  5. 신문이나 그 밖의 서적류를 읽거나 방송 및 음악청취 행위
  6.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없이 녹음, 녹화, 촬영 및 자료를 배포하거나 작성하는 행위
  7.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
  8. 소란행위 등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
- ②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방청인에 대하여 즉시 퇴장 조치할 수 있으며,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회를 선포할 수 있다.

**제76조(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)**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의회의 의사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 방송 할 수 있다.

② 중계방송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운동 자료 또는 중계방송 중 상업용 광고의 삽입 등 정치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**제77조(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)**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(공청회,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포함한다)를 그 대상으로 한다.

② 자치단체장의 의회연설, 예산안에 대한 자치단체의 시정연설, 공청회,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, 중요안건의 심의,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등은 우선적인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.

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,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78조(의정활동상황의 공개)** ① 의장과 위원장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, 공개 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연간 회기운영계획,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
2.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심사보고서
3. 행정사무감사 · 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
4. 의안(청원을 포함한다)의 접수 및 처리 현황
5. 의원별 회의출석률, 의원발의, 대집행기관질문현황
6. 그 밖에 회의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

## 제7장 징 계

**제79조(징계의 요구와 회부)** ①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(이하 “징계대상자”라 한다)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

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.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

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모욕을 한 의원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이 요구되지 아니하며, 징계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

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다.

**제80조(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)** ① 제79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,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,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,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나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에 부치는 시한 또한 같다.

② 제79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,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폐회기간 중에 징계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제79조제1항에서 제4항에 따라 징계가 회부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,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할 수 없을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, 본회의 의결을 얻어 3월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**제81조(의사의 비공개)**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
**제82조(심문과 변명)**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거쳐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.

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하여 본회의나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.

- 제83조(징계의 의결과 선포)**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. 다만, 폐회 중 일때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로 한다.
- ② 징계의 종류 중 ‘30일 이내의 출석정지’의 경우 비회기(폐회) 기간을 제외한다.
- ③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.
-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의 전문성과 징계 양형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**제84조(시행규정)**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훈령으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적용례)**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**제3조(경과조치)**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.